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86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김준형·김선민·신장식

이해민 • 박지원 • 권칠승

이재강 • 이재정 • 정준호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 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 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4(제76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4 외국인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76조의11(외국인여행증명서)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주권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6조의6부터 제76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장의4 외국인여행증명서 발급 등
<u> <신 설></u>	제76조의11(외국인여행증명서)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영주권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의5제2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76조의6
	부터 제76조의8까지를 준용한
	<u>다.</u>